

# 『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## 검 토 보 고 서

### 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### 2. 제안이유

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일부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.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개정(안 제10조제2항)
- 나.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 신설(안 제25조의2)
- 다. 시장관리자 지정의 취소 절차 신설(안 제31조의2 )
- 라. 공유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 등에 관한 특례 조항 신설(안 제34조의2)
- 마.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절차 신설(안 제41조의2)

### 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, 「행정절차법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.

## 5. 검토의견

○ 본 「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,

- 상위법인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전통시장 상인회 등록 취소와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하여 명확성을 제고하고, 상위법에 의한 공유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 등에 관한 특례 조항 등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